



Tax News Flash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 및 특별징수

December 16, 2014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2014 사업연도 분부터 관련 신고납부에 주요한 변화가 있어 이를 사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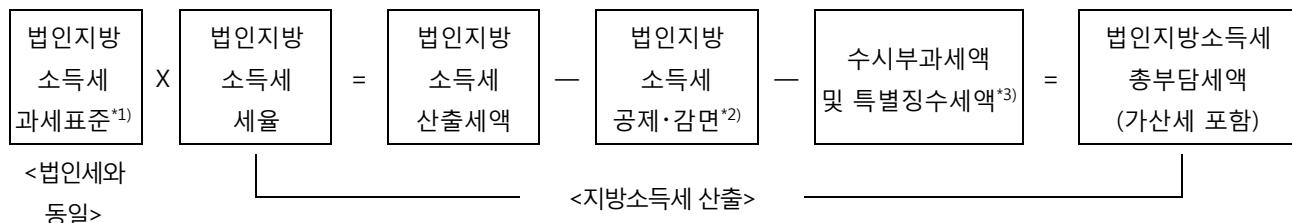
2014년 1월 1일 지방세제 개편시, 그 동안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하여야 하는 바, 관련 내용을 요약 ·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삼일회계법인 전문가들께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I. 2014년 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 2014. 1. 1. 지방세제 개편시, 그 동안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201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법 §13(연결법인의 경우 법법 §76의 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특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지법 §103의 19 및 §103의 34).

*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3)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는 2015.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2. 2014. 1. 1. 주요 개정 내용

○ 세율(지법 §103의 20 및 §103의 35)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 종전에는 법인세 공제 · 감면세액이 반영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 · 납부하였으나, 2014. 1. 1.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독자적으로 산정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감면을 전면 배제함에 따라 법인세 공제 · 감면세액의 10% 만큼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 신고 기한 및 특례 등

구분	신고 기한 등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지법 §103의 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지법 §103의 37)
수정신고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지법 §103의 23)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지법 §103의 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내에 신고 · 납부(구지법 §91 ①)
결정 · 경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지법 §103의 23)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지법 §103의 25). ※ 종전의 경우 결정 · 경정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 납부(구지법 §91 ①)
신고납부 특례	없음(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 결정 또는 신고세액의 10% 미달시에도 법인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 ※ 종전의 경우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 미달시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 가능(구지법 §91 ①)
납부만 이행시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종전의 경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구지법 §91 ⑤).

○ 시행시기 : 2014. 1. 1.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고서 및 첨부서류

○ 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침 별지 제4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지법 §103의 23 ②, 지령 §100의 12 및 지침 §48의 4)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침 별지 43호의 2 서식)
- ③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지침 별지 43호의 3 서식)
-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지침 별지 43호의 4 서식)
- 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침 별지 43호의 5 서식)
- 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침 별지 43호의 6 서식)
- ⑦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지침 별지 43호의 9 서식)
- ⑧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 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표시통화재무제표")
- 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⑪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침 별지 4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지령 §100의 25 및 지침 §48의 10)

- ①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침 별지 제44호의 2 서식)
- 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지침 별지 제44호의 3 서식)
- ③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지침 별지 제44호의 4 서식)
- ④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침 별지 제44호의 5 서식)
- ⑤ 각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침 별지 제43호 서식)와 상기 ①~⑪의 서류

4. 전자신고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음. 특히 위택스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식 레이아웃 및 납부 매뉴얼을 게재중인 바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 바람.

II. 2015 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및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지법 §103의 29 ① 및 §103의 52 ①)
- 특별징수 의무
 - 1)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법 §103의 29 ②)
(*) 조특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
 -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법 §103의 52 ②)
- 특별징수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종전에는 내국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 지급시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음.
- 시행시기 : 이자 · 배당소득 지급시 특별징수하는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지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1조 및 2조(2014. 3. 24. 개정)]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및 국제통상	금융세무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주정일 709-0722 jjjoo@samil.com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sspark@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전원엽 3781-2599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이동복 709-4768 dongblee@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조정환 709-8895 jwhancho@samil.com	글로벌 서비스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해외파견세무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조세불복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조남복 709-0501 njo@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상속증여 및 주식변동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서백영 709-0905 byseo@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